

의안번호	2200931
의 퇴 인	위성곤의원
회 답 일	2024. 8. 9.
추계번호	24D129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부터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부터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행정시 폐지 및 시·군 설치(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¹⁾에

1)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정시에는 행정시장을 두며,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함

- 개정안은 행정시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시·군을 두려는 것으로, 시장·군수 선출에 필요한 투표비용,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화 시스템의 정비 비용,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²⁾
- 다만, 현재 시점에서 행정시를 폐지하고 신설될 시·군의 수³⁾와 이에 따른 시장·군수 선출비용, 청사 재배치 또는 신축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정보화 시스템 정비 규모, 표지판 등의 명칭 변경 비용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②, ③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2) 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현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가능하므로, 주민투표 실시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3) 참고로, 행정시 폐지 전 제주도의 시·군은 4개(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였으며, 2024년 2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추어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시·군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nabo.go.kr